원격수업 운영 규정

□ 제정 : 2020. 7. 1.
□ 개정 : 2020. 9. 1.
□ 개정 : 2021. 2. 26.
□ 개정 : 2021. 9. 1.
□ 개정 : 2021. 12. 1.
□ 개정 : 2022. 3. 1.
□ 개정 : 2024. 1. 11.
□ 개정 : 2024. 3.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학칙 시행세칙, 교무학사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원격수업"이란 인터넷, 정보통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의미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원격수업 교과목 : 15주 이상의 강의를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
2.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교과목 :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혼합형 교과목을 말하며, 블렌디드 러닝 적용 교과목에서 원격수업의 비중이 전체 수업(평가 활동 제외) 시수의 70% 이상이면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대면수업 교과목으로 본다.
3.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라 한다) : 본교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
4. 강좌시간 : 원격수업 콘텐츠 재생 시간
5. 학습시간 : 강좌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 퀴즈 및 과제 시간 등을 종합한 시간

제3조 (위원회) ① 원격수업의 콘텐츠 질 관리와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되, 교학

부총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단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과대표)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3. 교학부총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제반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 강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개설)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강좌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강좌의 형태로 개설될 수 있다.

② <삭제>

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신규 개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강의개시 및 종료) 원격수업 강좌의 개시와 종료는 본교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6조 (학점인정)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강좌로 개설된 원격수업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정규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7조 (강의 운영) ① 원격수업 교과목, 블렌디드 러닝 교과목은 LMS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 콘텐츠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은 강의계획서에 따라 진행하며, 학기별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학기 시험을 포함하여 15주 이상, 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담당교수는 동영상 강의 외의 학생참여 교육활동(과제 제출, 퀴즈, 시험, 온라인 토론, 질의응답 등)을 실시하고 관리한다.

제8조 (이수학점) ① 본교에서 재학 기간 내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

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삭제>

제9조 (수강인원) ① 원격수업의 최대 수강인원은 전공교과목은 50명, 교양교과목은 10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반을 허용한다.

②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미만인 원격수업은 합반 또는 폐강처리 할 수 있다. 단, 총장의 재가를 얻거나 또는 계절학기 운영강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실시간 화상수업의 수강인원은 대면수업 운영방식을 준용한다.

제10조 (출석) ① 출석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주차별 학습기간 내에 시청
2. 각 차시별 기준시간 이상 시청

② 전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학습기간 이후라도 시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출석인정 기준은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수강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한다.

④ 출석인정 기준은 본교 학칙, 학칙 시행세칙, 교무학사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진행) ① 학기, 수업일수 및 방법, 정기휴업, 임시휴업 등 휴업 중 수업에 관해서는 본교 학칙에 따른다.

② 원격수업의 콘텐츠는 1학점 기준으로 1차시당 콘텐츠 재생 시간이 25분 이상되도록 한다. 단, 실습 교과목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 강좌의 학습 시간은 1학점 기준 1차시당 50분 이상 되도록 구성하며, 자체제작 동영상과 퀴즈, 과제, 토론 및 강의자료 등의 온라인 학습활동으로 학습시간을 구성한다.

제12조 (평가 및 시험)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출석, 과제, 시험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 시험은 출석하여 평가하는 오프라인 시험으로 실시한다. 단, 교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본교 학칙, 학칙 시행세칙, 교무학사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삭제>

제13조 (강의시수 인정) ① 원격수업 강좌의 교수자는 본교 전임교원 중 콘텐츠 개발자가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의 진행상 개발자 이외의 교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의 시수는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교과 시수대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콘텐츠 개발) ① 원격수업 콘텐츠는 본교에서 신규로 직접 개발하거나 보유 중인 콘텐츠, 외부 수주에 의한 개발 및 타 기관이 개발하여 보유 중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음성, 동영상, 시뮬레이션 등)를 활용하여 개발한다.

③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개발 또는 외부 수주에 의해서도 개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기준에 따라 개발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④ 원격수업 교과목의 콘텐츠 개발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원격수업콘텐츠 개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한 후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한다.

⑤ 위원회에서는 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콘텐츠개발 승인여부 및 개발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⑥ 해당 교원은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와 함께 콘텐츠(온라인 학습활동자료 포함)를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⑦ 콘텐츠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면 콘텐츠를 개발한 교원은 15일 이내에 콘텐츠를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한다.

⑧ 최종 제출한 콘텐츠가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개설되지 못하며, 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인건비 항목을 반납해야 한다.

제15조 (콘텐츠 질 관리) ① 신규 개발 또는 보완이 이루어진 콘텐츠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13조의 7항과 8항에 따라 콘텐츠 질 관리를 수행한다.

② 개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콘텐츠 및 평가가 필요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콘텐츠 유지, 수정 및 보완, 폐기, 재개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제16조 (콘텐츠 저작권) ① 본교에서 개발된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본교에 귀속되며, 총장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 및 유포시킬 수 없다.

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콘텐츠 개발자에게 있다.

제17조 (외부콘텐츠 사용에 대한 기준) K-MOOC 또는 외부플랫폼 탑재 영상 등은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본교 학칙과 학칙시행세칙, 교무학사 관리 규정을 준용하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천재지변 및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일반과목들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별도의 지침을 정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정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개발책임자</td><td>성명</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학과</td><td></td><td>직 위</td><td></td></tr>
<tr><td>이메일</td><td></td><td>핸드폰번호</td><td></td></tr>
<tr><td colspan="2">교과목명</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활용 형태</td><td colspan="2">콘텐츠 분류</td><td colspan="2">활용시기 및 기간</td></tr>
<tr><td rowspan="2">정규과정</td><td>☐ 전공 교과목</td><td colspan="2">(　　)학년도　(　　) 학기</td></tr>
<tr><td>☐ 교양 교과목</td><td>역량유형</td><td></td></tr>
<tr><td>학점/시간</td><td colspan="4">학점　　시간</td></tr>
<tr><td>개발효과</td><td colspan="4">참고자료 포함</td></tr>
</table>

본인은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을 위해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교내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책임자 :　　(서명)

학과장 :　　(서명)

수 원 과 학 대 학 교 총 장　귀중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계획서

1. 원격교육 콘텐츠 제목

한글	
영문	

2. 개발 목적 및 필요성

• 개발목적의 타당성, 콘텐츠 내용과 대상 교과목과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기술하십시오

3. 교과목의 수업방법 (특징)

• 해당 교과목이 가지고 있는 수업방법 등의 특징을 교수-학습과 연관하여 기술하십시오

4.. 각 주차별 수업 설계

• 해당 교과목 강의계획서에 부합하도록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주차명	차시구분	학습내용	학습목표	구성(콘텐츠)
1주차 (예시)	이러닝의 이해	1차시	이러닝의 이해	이러닝의 정의를 3요소에 맞게 서술할 수 있다	PPT음성강의, 학습 퀴즈
		2차시	이러닝의 활용	이러닝의 활용사례를 3가지 이상 나열할 수 있다	PPT음성강의,논문, 유튜브 영상, 퀴즈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5. 결과물의 기대효과

6. 개발 후 원격교육 강의 의무 운영과 관련된 동의 확인

본인은 금번 원격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 및 재개발 신청에 있어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경우, 향후 콘텐츠가 개발 완료되면 온라인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발 익년도부터 2년간 LMS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자 (서명)

7. KOCW (강의 공개)활용 동의 여부 확인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KOCW)를 위한 개발 원격교육 콘텐츠의 강의 공개 활용하는 것에 동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본인은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작지원사업 과제신청 및 선정,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본 사업 과제신청과 선정 평가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본 사업 과제의 비용지급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콘텐츠 제작, 콘텐츠 평가 및 사용 등록을 위하여 제작업체 등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이름, 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이용·제공은 본 동의서가 작성된 시기로부터 과제제작 완료기간 까지
- 보유는 본 동의서가 작성된 시기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콘텐츠 제작지원 참여가 불가함

년 월 일

책임자 : (서명)

수 원 과 학 대 학 교 총 장 귀하